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 04. 07.)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는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8일부터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
 -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하는데, 이중 900여 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 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illegible]